

#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4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4. .  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,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개선(안 제9조)

- 연중무휴, 일 24시간제 운행하며, 장기이용도 할 수 있다.  
→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등은 조정할 수 있다.

나.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추가(안 제10조)

-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붙임

다. 합 의 : 완료

라. 그 밖의 사항

- (1) 입법예고 (2014. 3. 12. ~ 4. 1.)결과 : 의견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완료
- (3) 부패영향평가 : 심사완료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완료

##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은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③ 연중무휴, 일 24시간제로 운 행하며, 장기이용도 할 수 있 다.</u>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10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자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9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은 조정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자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</u></p> <p><u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u>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

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6.1]

### 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
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2.11.30>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수반 요인

- 본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,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하기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수반요인이 없음.

## 2. 미첨부 근거규정

-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의 경우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의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수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과정상에서나 혹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정에서 재정수반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

## 4. 작성자

- 경제건설국 교통과장 박부규